

 <p>거창군 Geochang County</p> <p>공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는다.</p>	<h1 style="font-size: 4em; margin: 0;">공 보</h1> <p style="font-size: 1.5em; margin: 0;">제799호 2021. 4. 14(수)</p>	
---	--	---

선 결	기관의 장

고 시

제2021-62호 거창군계획시설(유통 및 공급시설수도공급설비)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 2	2
제2021-63호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4
제2021-66호 거창군관리계획(체육시설골프장)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6
제2021-67호 도로명주소 고시	8

공 고

제2021-565호 입석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보상계획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청취 공고	10
제2021-577호 「거창군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4
제2021-584호 어린이보호구역 지정(확대)에 따른 행정예고	26
체육시설사업소 공고 제2021-11호 보상계획열람 공고	29

회 람									
------------	--	--	--	--	--	--	--	--	--

발 행 : 거창군 편 집 : 기획예산담당관 (055-940-3043, 행정 3043)

※ 거창군 공보는 거창군 홈페이지(<http://www.geochang.go.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거창군계획시설(유통 및 공급시설:수도공급설비)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거창군 고시 제2019-68호(2019.06.26.)로 최초 결정된 군계획시설(유통 및 공급시설:수도공급설비)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 인가 고시합니다.

2021. 4. 14.

거 창 군 수

1. 사업의 개요

종 류	명 칭	위 치	시 행 규 모		사 업 기 간	최 초 결정일
			결정면적	금회시행		
유통 및 공급시설 (수도공급설비)	가지리 배수지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산196-11번지	973㎡	973㎡	실시계획인가일로 부터 2021.10.31	거창군 고시 2019-68호 (2019.06.26)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거창군수(수도사업소장)
- 주 소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3.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착수 예정일 : 2021. 4월
- 준공 예정일 : 2021. 10. 31.

4.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 붙임참조

5. 관계도서는 거창군청 도시건축과와 상하수도사업소에 비치하였으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도시건축과(☎055-940-3583) 및 수도사업소(☎055-940-86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일련 번호	소 재 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주소	성명	권리명	권리자	
합계	-	-	-	973	973					
1	거창읍 가지리	산196-11	수도	973	973		거창군			

고 시 문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거창군 거창읍 거열로4길 98, 304호 주식회사 엘림주택 백선욱이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주택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04월 09일
거창군수

1. 사업명 :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가지리 하나로4차 공동주택 신축공사)
2. 사업주체 : 거창군 거창읍 거열로4길 98, 304호, 주식회사 엘림주택(대표 백선욱)

3. 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규모

가. 위치 : 경남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282외 4필지

나. 대지면적 : 4,975.0m²

다. 연면적 : 7,848.8961m²

라. 규모

- 아파트 1동(68세대), 관리사무소 1동 59.5998m²

마. 형 별 : 84A형(전용면적 84.7343m²), 79B형(전용면적 79.3239m²)

4. 변경사항

가. 개발행위변경

- 구조물(옹벽 및 보강토 옹벽) 등 부지조성계획 변경

- 사업기간 연장(2019.06.07. ~ 2022.02.28.)

나. 주차대수 및 주차구획 변경(98대 ⇒ 100대)

다. 시공사 주소 변경(거창읍 공수들1길 29 2층 ⇒ 거창읍 소만5길 31)

라. 시공사 대표 변경(이현범 ⇒ 이현오)

5. 사업시행기간 : 2019년 10월 ~ 2021년 5월

●거창군 고시 제2021- 66호

거창군관리계획(체육시설:골프장)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거창컨트리클럽 조성사업』에 따른 거창군계획시설(골프장)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100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합니다.

2021년 04월 15일

거창군수

1. 거창군계획시설(골프장)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없음) :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덕산리 산13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종 류 : 군계획시설(체육시설)사업
- 명 칭 : 거창 컨트리클럽 조성사업(일명:감악산골프장)

다. 사업규모(변경없음)

- 면적 : 1,817,634.5㎡
-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군계획시설 (체육시설)	합 계	1,817,634.5	100.0	
	체육시설 용지	333,433	18.3	
	건축시설 용지	9,165	0.5	세부 건축계획 변경 (증 820.19㎡) 당초 건축연면적 : 4,657.88㎡ 변경 건축연면적 : 5,478.07㎡
	공공시설 용지	94,318	5.2	
	녹지 용지	1,380,718.5	76.0	

라.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변경없음)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 해성2빌딩)
- 성 명 : 코리아신타(주) 대표이사 백인균

마. 사업기간(변경없음)

- 2008. 03. 13. ~ 2021. 12. 31.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 붙임참조

2 관계도서 : 열람장소 비치[거창군청 도시건축과(☎055-940-3583)]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합계		13필지		1,817,634.5	1,817,634.5					
1	신원면 덕산리	231	답	253.8	253.8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 해성빌딩)	코리아신타 주식회사			
2	신원면 덕산리	255	임	205.7	205.7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 해성빌딩)	코리아신타 주식회사			
3	신원면 덕산리	256	임	89.3	89.3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 해성빌딩)	코리아신타 주식회사			
4	신원면 덕산리	257	임	88.5	88.5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 해성빌딩)	코리아신타 주식회사			
5	신원면 덕산리	374	답	2,135.8	2,135.8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 해성빌딩)	코리아신타 주식회사			
6	신원면 덕산리	377	임	86.8	86.8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 해성빌딩)	코리아신타 주식회사			
7	신원면 덕산리	378	답	880.6	880.6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 해성빌딩)	코리아신타 주식회사			
8	신원면 덕산리	379	답	229.4	229.4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 해성빌딩)	코리아신타 주식회사			
9	신원면 덕산리	380	답	412.1	412.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 해성빌딩)	코리아신타 주식회사			
10	신원면 덕산리	391	답	836.3	836.3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 해성빌딩)	코리아신타 주식회사			
11	신원면 덕산리	440	임	1,222	1,22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 해성빌딩)	코리아신타 주식회사			
12	신원면 덕산리	산13	임	1,808,892.2	1,808,892.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 해성빌딩)	코리아신타 주식회사			
13	신원면 덕산리	산59	임	2,302	2,30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 해성빌딩)	코리아신타 주식회사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 4. 14.

거창군수

- 부여한 도로명주소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당동1길 159-67 등 10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폐지)사유	비고
(별 도 열 람)				

○ 도로명주소 사용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과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8조,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 제7항에 따라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 이름,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 고시내용과 기타 사항은 거창군청 민원소통과(☎055-940-3313)로 문의하시거나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부여.변경.폐지) 고시 조서

일련 번호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고 시 일		도로명부여사유	이동 사유	비고
			도로명	도로명주소			
1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양평리 849-6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당동1길 159-67	20210414	20090401	금귀봉 봉수대의 수비꾼이 거처하던 당이 있다하여 붙여진 자연마을 이름이 반영된 첫번째 도로	건물 번호 부여	
2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소정리 1016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당산말길 135-56	20210414	20090401	당산이라는 자연마을 이름 반영	건물 번호 부여	
3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서변리 189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사동1길 153	20210414	20090401	마을 서북 1킬로미터 산골짜기에 분청사기를 굽던 가마터가 있어 붙여진 자연마을 이름이 반영된 첫번째 도로	건물 번호 부여	
4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서변리 189-3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사동1길 157	20210414	20090401	마을 서북 1킬로미터 산골짜기에 분청사기를 굽던 가마터가 있어 붙여진 자연마을 이름이 반영된 첫번째 도로	건물 번호 부여	
5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산수리 1053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산수길 13-333	20210414	20090401	산수 경치가 좋아서 이름 붙여진 자연마을 이름 반영	건물 번호 부여	
6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장기리 490-26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장터길 50-1	20210414	20090401	장터가 있었다하여 붙여진 옛지명이 반영된 도로	건물 번호 부여	
7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장기리 490-25, 490-48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장터길 50-2	20210414	20090401	장터가 있었다하여 붙여진 옛지명이 반영된 도로	건물 번호 부여	
8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1182-4, 1182-5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중앙농로길 161-5	20210414	20090401	예로부터 불려져 내려오는 기존 도로명이 반영된 도로	건물 번호 부여	
9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738, 739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청림1길 138-31	20210414	20091228	마을 가에 푸른 숲이 있어 붙여진 자연마을 이름이 반영된 첫번째 도로	건물 번호 부여	
10	경상남도 거창군 웅양면 노현리 292-2, 295-3, 395-3, 1410-18, 1432-10	경상남도 거창군 웅양면 화평길 38	20210414	20090401	자연마을 이름이 반영된 도로	건물 번호 부여	부여

●거창군 공고 제2021 - 565호

입석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보상계획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청취 공고

거창군에서 시행예정인 『입석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 및 제21조(사업인정에 대한 협의 및 의견청취)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일

거창군수

1.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가. 명 칭 : 거창군수(안전총괄과장)
- 나. 주 소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사 업 명 : 입석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 나. 위 치 : 거창군 고제면 농산리 일원
- 다. 사 업 량 : 축제 L=115m, 보축 L=155m, 교량 재가설 1개소

3. 보상대상 및 열람내용

- 가. 토 지 : 거창군 고제면 농산리 1856번지 일원
- 나. 물 건 : 편입 토지상에 소재한 지상물건 일체
- 다. 열람내용 : 사업구간 내 편입토지 등 확인 및 누락 여부
- 라. 보상조서 : 붙임문서 참조

4. 열람 및 이의신청

- 가. 열람(이의신청) 기간 : 게재 익일로부터 14일간
- 나.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 경제산업국 안전총괄과
⇒ ☎055-940-3652
- 다. 이의제기 : 토지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5. 보상협의 및 지급시기

- 감정평가 실시 결과 개별통지 예정

6. 보상방법 및 절차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3인이상 (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과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2인)에게 평가를 의뢰한 후 동법 시행규칙 제16조 제6항에 따라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하여 거창군과 토지 등 소유자가 협의하여 계약을 체결 후 보상금 지급

【단, 동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토지소유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1인을 선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토지면적의 1/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본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나. 보상절차 : 보상계획공고 → 감정평가의뢰 및 실시 → 보상액산정 → 보상협의 요청 → 협의(계약 체결) → 소유권 이전 및 보상금 지급 → (협의불성립 시) 수용재결 → (협의불성립 시) 공탁

7. 기타사항

가. 보상조서 물건내역은 추후 분할측량 및 계획변경, 재조정,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해 변경 또는 제외될 수 있으며, 상기 내용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의함

나. 본 열람공고와 별도로 기 손실보상 협의 요청한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지 할 예정이나 송달 불능 등으로 인한 미수령자에게는 본 열람공고로 송달에 갈음합니다.

○ 토지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 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주소	성명	권리 명	권리자	
합계		-	-	145,521	2,187					
1	고제면 농산리	1856	도	998	89	건설부	국			
2	“	752-1	대	162	86	-	전○만			
3	“	752-2	도	17	17	-	전○룡			
4	“	1856-1	대	23	23	건설부	국			
5	“	204-2	도	109	109	-	이○민			
6	“	203-7	도	327	53	거창읍 동동	이○보			
7	“	204-3	대	50	50	고제면 농산리 204	최○철			

8	“	203-5	도	307	175	거창읍 동동	이○보			
9	“	203-3	도	63	7	거창읍 동동	이○보			
10	“	203-6	대	350	350	고제면 농산리 203-6	강○기			
11	“	686-2	도	83	83		거창군			
12	“	702-2	도	152	65		거창군			
13	“	702-3	답	30	30	고제면 농산리 산686	박○원			
14	“	686-3	대	304	304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 3가 79-4 현대아파트 202동 206호	김○영			
15	“	1857	구	173	9	농림수산부	국			
16	“	1861	도	312	94	건설부	국			
17	“	1848	천	142,061	643	건설부	국			

<붙임 : 의견서 >

『입석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보상계획 및 사업인정 의견청취
공고에 따른 의견서

1.제 목		
2.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성 명(명칭)	
	주 소	
3.의 견		
4.기 타		
<p>『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제 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 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21.</p> <p>의견 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p> <p>거 창 군 수 귀하</p>		
비 고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거창군 공고 제2021- 577호

「거창군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거창군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13일

거 창 군 수

1. 자치법규명 : 「거창군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조례」

2. 제정이유

지적재조사위원회와 경계결정위원회의 서면 심의·의결의 근거를 마련하여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제때에 위원회 심의·의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지적재조사위원회 등의 설치 근거를 마련(안 제1조의2)

나. 서면 심의·의결 근거 및 적용규정 마련(안 제3조, 제5조)

1) 사유: 경미한 내용, 긴급할 때, 천재지변 등

2) 의결정족수 적용, 회의록작성 제외

다. 법령 재기재 삭제(안 제9조)

1) 위원 수당: 「거창군 위원회 수당과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제 3조에 따라 개별조례 규정 없이 수당지급 가능

4. 예고기간 : 2021. 4. 13.(화) ~ 5. 3.(월)

5. 의견제출

가. 이 시행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1년 5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 민원소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2)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3)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다. 주소 : (우 50132)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거창군청)

라. 전화 055-940-3322, 팩스 055-940-3288, 이메일 jins79@korea.kr

6.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 민원소통과 지적재조사담당(☎055-940-332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2. 「거창군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부.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 조 례 명 : 거창군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개정안 내용	의 건	비 고

거창군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1-
----------	-------

제출일자	2021. 4. .
제 출 자	민원소통과장

1. 제안 이유

지적재조사위원회와 경계결정위원회의 서면 심의·의결의 근거를 마련하여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제때에 위원회 심의·의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적재조사위원회 등의 설치 근거를 마련(안 제1조의2)

나. 서면 심의·의결 근거 및 적용규정 마련(안 제3조, 제5조)

1) 사유: 경미한 내용, 긴급할 때, 천재지변 등

2) 의결정족수 적용, 회의록작성 제외

다. 법령 재기재 삭제(안 제9조)

1) 위원 수당: 「거창군 위원회 수당과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개별조례 규정없이 수당지급 가능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제31조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1. 4. 13. ~ 2021. 5. 3.

나) 예고결과:

3) 비용추계서: 해당 없음

4) 성별영향평가: 의뢰

5) 사회보장협약: 협의여부(행정복지과 복지정책담당)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 제명 “거창군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조례”를 “거창군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및”을 “와 거창군”으로 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제31조에 따라 거창군 지적재조사위원회와 거창군 경계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소속으로 둔다.

제2조제1항 중 “거창군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위원회”로 한다.

제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 심의·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으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제5조제2항 중 “간사”를 “군수”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

다.

다만, 제3조제3항 각 호에 따라 서면심의를 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지 아니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거창군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u>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0조·제31조에 따라 거창군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u><신 설></u></p> <p>제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u>거창군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u>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생략)</p> <p>제3조(회의) ①~② (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u><신 설></u></p>	<p>거창군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u>운영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0조·제31조에 따라 거창군 지적재조사위원회와 <u>거창군</u> 경계결정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의2(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제31조에 따라 거창군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거창군 경계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소속으로 둔다.</p> <p>제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u>위원회</u>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현행과 같음)</p> <p>제3조(회의) ①~② (현행과 같음) ③ <u>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 심의·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u> 2. <u>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u> 3. <u>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으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u>

제5조(간사) ① (생략)

② 간사는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관계인 및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간사) ① (현행과 같음)

② 군수는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3항 각 호에 따라 서면심의를 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지 아니한다.

<삭제>

관계법령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0. 7. 8.] [법률 제17219호, 2020. 4. 7., 타법개정]

제30조(시·군·구 지적재조사위원회) ① 시·군·구의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지적소관청 소속으로 시·군·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시·군·구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시·군·구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제12조에 따른 지적공부정리 등의 정지 대상
2. 제19조에 따른 지목의 변경
3. 제20조에 따른 조정금의 산정
4.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하여 시·군·구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 시·군·구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시·군·구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 시·군·구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해당 시·군·구의 5급 이상 공무원
2. 해당 사업지구의 읍장·면장·동장
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4.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

⑥ 시·군·구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⑦ 시·군·구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그 밖에 시·군·구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31조(경계결정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지적소관청 소속으로 경계결정위원회를 둔다.

1.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
2. 경계설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② 경계결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인 판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지적소관청이 지정한다.

④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이 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위원은 해당 사업지구에 관한 안건인 경우에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다.

1. 관할 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적소관청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 가. 지적소관청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 나. 변호사, 법학교수, 그 밖에 법률지식이 풍부한 사람
 - 다. 지적측량기술자, 감정평가사,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
3. 각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각 사업지구의 읍장·면장·동장
- ⑤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에는 제4항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⑥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⑦ 경계결정위원회는 직권 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사실조사를 하거나 신청인 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적소관청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 ⑧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경계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 ⑨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 또는 의결은 문서로써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⑩ 제9항에 따른 결정서 또는 의결서에는 주문, 결정 또는 의결 이유, 결정 또는 의결 일자 및 결정 또는 의결에 참여한 위원의 성명을 기재하고, 결정 또는 의결에 참여한 위원 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서명날인을 거부하거나 서명날인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위원의 경우 해당 위원의 서명날인을 생략하고 그 사유만을 기재할 수 있다.
- ⑪ 경계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길라잡이 213

3) 위원회의 운영

가) 출석 회의의 원칙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부여하고 토론을 통해 합의를 도출한다는 위원회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위원회는 출석하여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에는 그 예외를 인정하여 서면결의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도 있다.

서면결의를 인정하려면 이는 회의 방식의 중요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므로 위원회 설치 근거가 되는 조례에서 이에 관한 규정을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서면결의 사유를 지나치게 확대하게 되면 위원회의 운영이 형해화될 수 있으므로 그 사유는 가급적 예외적인 경우로 한정하여야 한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서는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로 한정하여 서면결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행정기관의 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거나 보안과 관련된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로 개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 그 의견을 듣거나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특정한 위원에 의하여 부당하게 심의·의결이 되지 아니하도록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위원회의 운영) ① 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거나 보안과 관련된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통보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2. 안건의 내용이 공개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 및 공공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법 제9조제2항에서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1. 위원회는 법령에 규정된 심의등의 기한을 준수하여야 하며, 심의등의 기한이

없는 경우에도 의사결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위원회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의등의 기준을 사전에 공개하고, 심의등의 결과에 대한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심의등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어린이보호구역 지정(확대)에 따른 행정예고

거창군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 위치 및 지정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합니다.

2021년 4월 13일

거창군수

1. 목 적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창동초등학교 후문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확대)지정.

2. 공고방법 : 거창군청 홈페이지(<http://www.geochang.go.kr>)게재

3.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1. 4. 13. ~ 2021. 5. 4. (21일간)

4. 지정위치 : 별첨1 위치도 참조

5. 관련근거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6.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붙임2)를 거창군 경제교통과(교통담당)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1. 4. 13. ~ 2021. 5. 4. (21일간)

나.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등

다. 제출서식 : 별첨2 서식참조

라. 문의 및 제출처

- 주 소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 경제교통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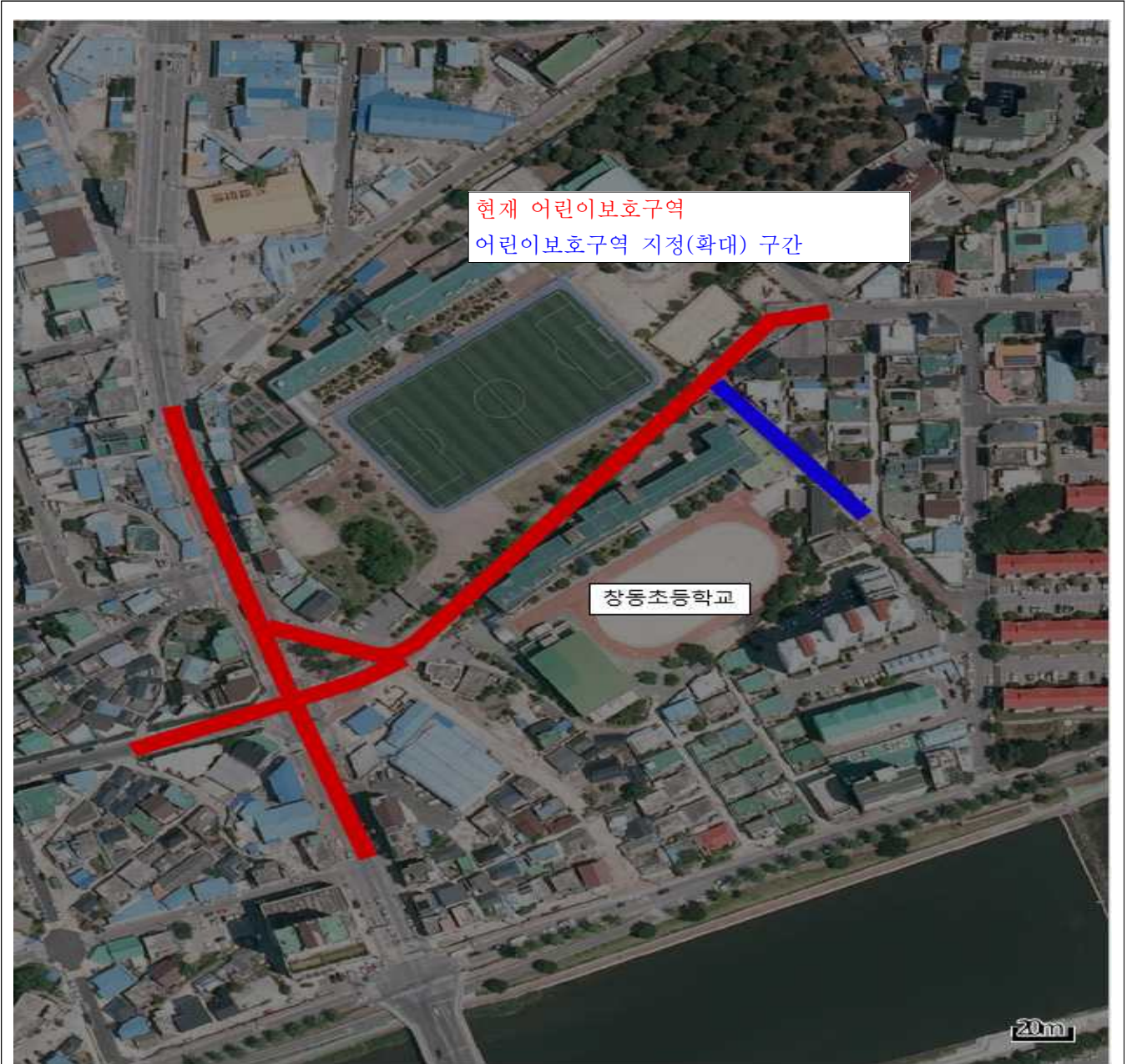
- 전 화 : (055)940-3382 / FAX : (055)940-3349

마. 기타사항

-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1】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위치



거창중학교 ~ 노벨선교어린이집 L=100m

보 상 계 획 열 람 공 고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일원에 계획된 「제2스포츠타운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0조에 따라 토지의 출입을 공고하고,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보상조서를 열람하시고 조서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내 이의신청하여 주시고 보상협약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4. 13.

거 창 군 수

1. 사업개요

- 가. 사 업 명 : 제2스포츠타운 조성사업
- 나. 위 치 :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일원
- 다. 사 업 량 : 양궁장겸용 축구장 2면, 야구장 1면, 그라운드 골프 8홀
-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사업시행자의 성명 : 거창군수(체육시설사업소장)
 - 주 소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심소정길 39-36

2. 토지출입내용

- 가. 출입사유 : 토지 및 물건 조사, 측량, 감정평가 등
- 나. 출입토지 : 경상남도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일원
- 다. 출입기간 : 2021. 4. 13. ~ 사업 종료 시까지

3. 보상대상 및 열람내용

- 가. 토 지 : 경상남도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일원
 - 나. 물 건 : 편입 토지상에 소재한 지상물건 일체
 - 다. 열람내용 : 사업구간 내 편입토지 등 확인 및 누락 여부
 - 라. 보상조서 : 붙임문서 참조
- ※ 토지 등 세부내역은 거창군청 체육시설사업소(체육시설담당) 및 거창군 홈페이지(<http://www.geochang.go.kr/> ⇒ 입법/공고/고시)에서 확인 가능함.

4.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이의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나.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심소정길 39-36 거창군청
체육시설사업소(☎055-940 - 8731, 8733)

다. 이의제기 : 토지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5. 보상협의 및 지급시기 : 감정평가 실시결과 개별통지 예정

6. 보상방법 및 절차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3인이상(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 및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2인)에게 평가를 의뢰한 후 동법 시행규칙 제16조 제6항에 따라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하여 거창군과 토지 등 소유자가 협의하여 계약을 체결 후 보상금 지급

【단, 동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토지소유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1인을 선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토지면적의 1/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본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나. 보상절차 : 보상계획공고 → 감정평가의뢰 및 실시 → 보상액산정 → 보상협의 요청 → 협의(계약체결) → 소유권 이전 및 보상금 지급 → (협의불성립 시) 수용재결 → (협의불성립 시) 공탁

7. 기타사항

가. 보상조서 물건내역은 추후 분할측량 및 계획변경, 재조정,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해 변경 또는 제외 될 수 있으며, 상기 내용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의함

나. 본 열람공고와 별도로 기 손실보상 협의 요청한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지 할 예정이나 송달 불능 등으로 인한 미수령자에게는 본 열람공고로 송달에 갈음합니다.

8. 토지조서

연 번	소재지	지 번	지 목	지 적 면 적		지 분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의 종류 및내용	
				m ²	m ²							
1	남양주시 북면	1390	전	1,085	1,010		김*조					
2	남양주시 북면	1411	전	795	754		김*조					"
3	남양주시 북면	1412-1	답	889	889		김*조					"
4	남양주시 북면	1412-2	구	10	10		김*조					"
5	남양주시 북면	1412-3	구	919	813		김*조					"
6	남양주시 북면	1412-4	답	449	449		김*조					
7	남양주시 북면	1412-5	답	420	221		김*조					
8	남양주시 북면	1412-6	답	310	310		김*조					
9	남양주시 북면	1412-9	구	139	139		김*조					
10	남양주시 북면	산 275	임	917	390		김*조					
11	남양주시 북면	1389-1	답	118	118		정*팔					
12	남양주시 북면	산274-1	임	331	102		이*옥					
13	남양주시 북면	1388-2	구	23	23		정*준					
14	남양주시 북면	1389-2	구	44	44		정*영					
15	남양주시 북면	1419-1	구	26	26		김*주					
16	남양주시 북면	1361	유	22,621	19,784		국 (건설부)					
17	남양주시 북면	1350-1	유	14,522	14,435		국 (건설부)					
18	남양주시 북면	1351-3	구	19	19		국 (농림수산부)					
19	남양주시 북면	1351-5	구	465	462		국 (농림수산부)					
20	남양주시 북면	1357-22	도	70	67		국 (건설부)					

연 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 적 면 적		지분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내용	
				m ²	m ²							
21	남하면 무릉리	1358 -3	유	1,897	1,832		국 (건설부)					
22	남하면 무릉리	1411 -1	유	3,028	3,028		국 (건설부)					"
23	남하면 무릉리	1412 -10	답	4	4		국 (건설부)					"
24	남하면 무릉리	1422	유	8,912	7,908		국 (건설부)					"
25	남하면 무릉리	1520 -10	구	294	7		국 (농림 수산부)					
26	남하면 무릉리	1548 -1	구	753	753		국 (농림 수산부)					
27	남하면 무릉리	1548 -3	구	602	529		국 (농림수 산부)					
28	남하면 무릉리	산27 1-1	유	606	71		국 (건설부)					
29	남하면 무릉리	산27 4-3	유	1,950	1,950		국 (건설부)					
30	남하면 무릉리	산27 5-1	유	273	273		국 (건설부)					
31	남하면 무릉리	산42 4-1	구	242	99		국 (농림수 산부)					
32	남하면 무릉리	산42 4	구	383	28		국 (농림수 산부)					

<붙임 : 의견서 >

**『제2스포츠타운 조성사업』
보상계획 공고에 따른 의견서**

1.제 목	
2.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성 명(명칭)
	주 소
3.의 견	
4.기 타	
<p style="text-align: center;">『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 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21. . . .</p> <p style="text-align: center;">의견 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p> <p style="text-align: center;">거 창 군 수 귀하</p>	
비 고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